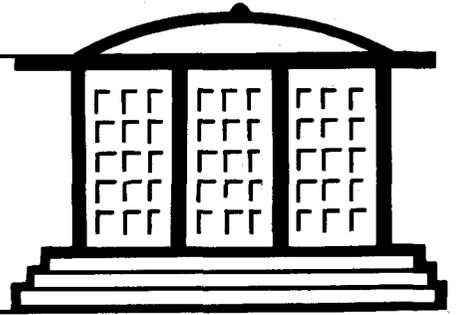


소식

기관단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축산폐수정화시설 88년6월 시행키로

- 설치기준은 현재 작업중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3094호, 1987. 4. 1부터 시행) 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19호, 87. 4. 1부터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02호, '87. 5. 30 공포 시행)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법제15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축산폐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축산폐기물은 환경보전법(법시행규칙 제733호, '83. 8. 1 개정관련조항)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 축산시설 규모

동법의 규제대상 축산시설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청소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특별청소지역) ①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령 6 조 관련)

시설의 종류	규 모
폐지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1,400㎡ 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250㎡ 이상 700㎡ 미만.
소사육시설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350㎡ 이상 600㎡ 미만.
말사육시설 (경마장에 부속된 말사육시설 포함)	면적 1,000㎡ 이상 1,200㎡ 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500㎡ 이상 600㎡ 미만.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500㎡ 이상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 1)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읍지역으로 하며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한편 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양축가들은 각자의 지역의 특별청소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 배출허용 기준

폐기물관리법상(표 2)의 대상농가의 배출허용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오수정화 처리기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축산폐수정화시설에서 방류수의 수질은 1일 축산분뇨배출량이 3킬로리터 미만인 축산시설의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500피피엠이하 3천킬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2천피피엠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법상 해당규모 양돈농가가 뇨를 법상 방류수준으로 처리한다면 부유물질은 생뇨(生尿)의 1/4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45,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1/45 수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는 부득이한 경우나 사용할 곳이 없을 때 택하는 방법일뿐 좋은 방법일 수는 없으며 가능한 가축의 분뇨는 자연에 환원시켜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 법적 신고의무 별칙

해당농가는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후 법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반 의무불이행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가축사육으로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판단될때 시장 군수는 축사이전 등 위해제거 또는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축사이전

축산폐수시설

구분	점검사항
저장액비화방법	누수의 발생여부, 저류조의 저류량 및 저류기간, 발효된 분뇨(액비)의 살포상태
매립저분방법	분뇨매립상태, 복토두께, 매립된 분뇨의 누출여부
사 퇴비화방법	건조정도, 통기장치의 통기량, 저장시설에서의 퇴비화정도
토양침투방법	부유물질의 저하량, 암거집수설비의 집수정도
살수여상방법	살수여상시설 각 부위의 스크 발생여부, 침전지의 오니침전량
산화구방법	침전지의 오니침전량, 고액분리 또는 회석정도, 산화구에서의 산화정도
방류수의 수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을 명할시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 제35조 ②)

이법(법, 령, 규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있으나 축산폐기물 관계조항 만은 신규입법조항인 점과 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1988년 6월 1일부로 시행(관보제 10657호, 87. 6. 9, 보건사회부령 제 802호 정정)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설치기준은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금년 10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계에 관해서는 큰 걱정이 없어 적정관리(계분관리를 잘하면 되는 수준으로 노천에 썩겨 내려가지 않는 정도)에 만전을 기하면 될것 같다.

한편 본회에서는 양계의 경우 처리시설을 계분처리시설로 대체해 달라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환경청에서 양계는 계분처리시설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회 편집국으로 문의바람)

■ 가금처리협회 설립인가



(류종래 회장)

도계장의 권익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가금 처리협회가 6월13일 농림수산부장관의 정식인가(허가번호 제 86호)를 받았다.

위생도계육 유통개선 및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민보건향상 및 축산진흥에 이바지 하기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동협회는 초대회장에 류종래씨(류성브로일러 대표이사, 전 양계협회 회장역임, 현 본회이사)가 취임한 바 있다.

동협회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양계업계의 필연사업인 위생도계육 유통정착과 정부시책 호응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양계산업발전과 위생도계육 유통에 동협회의 활약이 기대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0-4
- 전화 : (922) 1913~4

■ 미국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고시 폐지

농림수산부는 고시 제87-24호(87. 6. 19) 제86-6(86. 2. 15) 제86-10호(86. 3. 12)로 각각 고시한 미국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고시를 폐지하였다.

이는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가금 인플렌자가 발병하여 취하여진 조치였었다.

■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시행규칙 공포

농림수산부는 6월19일 부령 제978호로 농어촌지역 개발기금법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수입농축산물에 10%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된 이 법은 앞으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시대를 앞두고 양축가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87상반기 종계수입추천 현황

농림수산부는 '87종자용 병아리수입계획에 의거 수

입계획량 45만수(G.P.S 15만수, P.S 30만수)중 87년도 상반기 종계수입추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87상반기 종계수입추천 현황

월 별	수입추천수수					수입추천금액				
	G.P.S		P.S		계	G.P.S		P.S		계
	산란	육용	산란	육용		산란	육용	산란	육용	
1			22,700		22,700			96,041		96,041
2	2,450	14,000	5,750	11,500	33,700	99,800	175,170	23,186	25,597	323,753
3	3,000			5,000	8,000	90,000			14,000	104,000
4										
5			35,625	11,430	47,055			129,892	15,000	144,892
6		30,620	17,548		48,168		417,825	175,390		493,215
계	5,450	44,620	81,623	27,930	159,623	189,800	592,995	324,509	54,597	1,161,901

■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오세정 회장)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는 지난 7월 4일(토)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강당에서 8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오전10시 정기총회에서는 ▲ 87년도 결산 ▲ 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학회 임원개선 등 부의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 임원개선에 있어서 오세정교수(건국대 축산학과)가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에는 당연직으로 대한양계협회 회장, 한상욱교수, 박근식박사, 박영인회장, 김춘수교수, 정선부박사가 선임됐다.

■ USFGC 창립15주년 기념리셉션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회장 박영인)는 지난 6



월 2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미국공보원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리셉션을 가졌다.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리셉션에서 박영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협회는 지난 1972년 6월 1일 한국지부를 개설한 이래 한국의 사료축산 및 옥수수가공업계가 더불어 15개 성상을 보내왔다"고 회고하고, 지난 15년은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이들 사료곡물업계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던 기간으로 배합사료 생산은 무려 10배로 늘어났으며 육류, 계란 및 우유등 축산물 생산도 3~15배로 증가되었고 옥수수가공산업 또한 원료사용량이 약 15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사료곡물업계는 한국의 이와같은 발전과

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지나간 15년동안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는 한국정부, 관련단체, 학계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기술도입 및 유통개선은 물론 양국간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36회에 걸쳐 234명의 한국정부 및 업계대표로 하여금 미국의 관련 사업을 시찰토록 주선했고, 100여권의 기술 및 경제책자를 발간해 왔으며, 1,000회 이상의 세미나 및 축산물요리 강습회를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춘계학술세미나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6월20일(토)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하에 대한수의사회 협찬과 식량경제신보의 후원으로 춘계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전찬수 과장의「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시책방향」, 서울대 신광순 교수의「축산물 위생관리 관계법규에 대한 고찰」, 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 박근식 과장의「축산물 위생관리 행정조직 및 기능에 대한 고찰」, 천호부화장 오염록 상무의「축산물 검사업무와 유통관리에 대한 고찰」등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축산물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시책, 법규 행정조직과 아울러 축산물 검사업무에 대한 고찰까지 폭넓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축산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의 권익신장방안까지 취급해 토론시간을 진지하게 갖는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 한강보호운동 단계별로 실시

정부는 자연보호운동 및 88올림픽 환경정화운동의 일환으로 한강보호운동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87. 6. 11)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강보호운동 추진계획

1. 추진 방침

- 자연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한강 보호 운동 전개
- 분뇨수거처리, 정화조 청소 및 하천변 수중 오염 제거 운동 중점 추진
- 평통, 새마을, 정화위, 범민협등 협력 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캠페인 전개
- 한강변 요식업소 분뇨, 음식물 찌꺼기 중점 관리
- 각급 학교 교육을 통한 한강 보호 실천 운동전개

2. 운동 주체

- 행정 기관 : 내무부, 서울시
- 단체 : 평통, 정화위, 새마을, 범민협
- 지역, 직장, 자연 보호회
- 각 부처 산하 협회 및 단체
- 각급 학교 학생
- 기타 일반 주민

3. 중점 추진 사항

- 수거식 변소 분뇨 수거
- 수세식 변소 정화조 청소
- 생분뇨의 농사용 비료 사용 금지
- 가축사 분뇨 하천 방류 금지
- 분뇨 처리장 또는 간이 처리장 수거 분뇨 처리확행
- 강변 요식업소 변소 수시 수거
- 분뇨 수거 차량의 하천 무단 방류 지도 단속
- 불량 변소 개수
- 하천변 및 수중 오염 제거
- 음식물 찌꺼기, 주방 쓰레기 비닐 봉지 처리

1) 축산 폐수 관리 강화

- 축산 폐수 직접 방류 억제
 - 기업 양축가 정화조 설치 의무화
- 간이 정화조, 저류조등 처리 시설 설치 지도

2) 하천 감시 강화

- 대상 : 한강 유역 전하천
- 순찰 감시반 편성 운영 및 지역 지정 하천감시

- 원, 수문 관리인, 환경보존 모니터 요원등 활용
- 내용: 분뇨, 오물, 기름등 유해실태, 오물 투기 단속, 낚시장 및 위락장 관리 단속

3) 수질 오염도 측정 조사

- 주관: 환경청
- 지점: 10개 지점
- 항목: BOD, 대장균수등 조사

4) 추진 상황 합동 점검

- 합동 점검반 구성 점검 실시: 협력 단체 가동 실태 점검, 지도 격려
- 농촌지역: 정화조 청소 및 불량 변소 개수, 음식 찌꺼기, 주방 쓰레기 비닐 봉지 처리, 합성세제 적량 사용, 가축 분뇨 방류 방지, 비료 농약 적정 사용, 가축 사육장, 도축장 폐수 방류 방지, 인근 하천 청소
- 농·축산 분뇨: 가축사 분뇨 하천 방류 금지, 생분뇨의 농사용 비료 사용금지

해당지역에서 양축을 하는 양축가는 가축분뇨가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분뇨를 농사용 비료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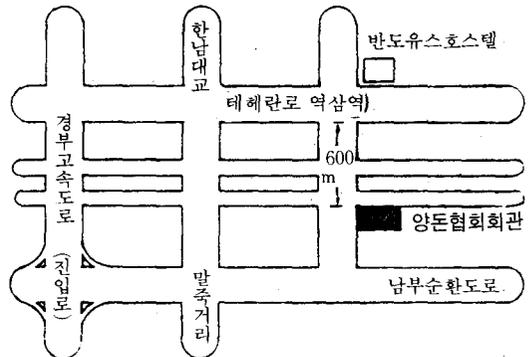
● 한강유역현황

시·도별	시·군·구	하 천
4개시·도	48개시·군·구	25개 하천
서울(17개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중구, 구로구, 서대문구, 강남구, 강동구	성내천, 고덕천, 탄천, 중랑천, 반포천, 안양천, 홍제천(7개)
경기(11개시·군)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군, 포천군, 광주군, 용인군,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경안천, 조종천, 가평천, 목천, 양화천, 정미천, 북하천, 덕풍천, 왕숙천, 중랑천, 탄천, 안양천(12개)
강원(12개시·군)	춘천시, 춘성군, 인제군, 원주시, 원성군, 횡성군,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성군, 화천군, 양구군	소양강, 홍천강, 양구서천, 인북천, 섬강, 평창강(16개)
충북(8개시·군)	충주시, 제천시, 제원군, 증원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 양돈협회 사무실이전 및 전화번호 변경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새로 양돈회관을 마련하여 6월25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전화번호도 변경되었다.

◆이전약도◆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76번지 (양돈회관)
- 변경전화번호: 553-3942~7

■ 한국농업경제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한국농협경제학회(회장 서종혁)가 오는 9월25(금)~26(土) 양일간에 걸쳐 농림수산부 후원으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창립3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동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급변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을 정립키 위하여 "고도산업사회와 농업의 발전"이란 대주제하에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7월7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제10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농수산 참가분과에는 축산학회 회원인 한인규 박사와 이남형 박사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한국축산학회(회장 김영교)가 지난 7월11일(토)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87년도 제43회 학술발표회 및 제37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동학회는 축산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여 그 기술을 널리 보급시켜 한국축산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창립된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회원들의 유익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보람있는 정보교환이 있었다.

■ 제48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제48 가축질병 예찰협의회(위원장 설동섭)가 지난 6월27일(토) 오전 9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각 시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홍보를 검토하고, 가축시장 방역체제강화, 예찰정보 전산처리교육 사업을 검토하는 등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 대한수의사회 도계검사원 교육수료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창국) 주관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일간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자재검사원(도계검사원)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 브로일러산업과 도계장의 역할」 「부분육의 생산과 처리」 등 새로운 내용이 보강되어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 한국가금학회 이사회 개최

한국가금 학회(회장 오봉국)는 지난 6월 24일(수)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가금학 연구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 협의안건은 ▲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의건 ▲ '87 한국가금학회 결산 ▲ '88 한국가금학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논의되었다.

■ 가축출하 상담실 설치운영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서울공판장 및 각 도지회, 회원조합, 가축시장 등에 가축출하 상담실 471 개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상담실에서는 축산물 가격동향과 신속한 정보제공 및 출하상담 등으로 자율적인 출하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전임직원을 배치, 상담에 응하게 된다.

한편, 상담실에는 지역별 가축사육동향, 거래 및 가격동향, 계통출하요령 등의 각종자료를 비치하게 된다.

■ 축산회관 이전확정

한국축육개량협회에서 관리를 맡아보던 축산회관이 지난 5월29일 농림수산부의 이전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회관이전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해 있는 축산회관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 신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지 800평에 연건평 600평 규모로 88년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 도입원료 크레임세미나

옥성씨비스상사(대표 金東洙)는 지난 6월26일 社内 회의실에서 도입원료 처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사료공장 구매부서 책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별강사로 초청된 조정곤씨(대한상사중재원 진흥과 근무)의 도입사료 원료 종류의 다양화를 비롯 수입선 다변화, 특정국가의 교역활동, 수입자유화품목의 증가 등에 대한 현황설명에 이어 크레임처리에 관한 중제의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 참석자들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됐다.

또 크레임은 사료원료의 도입과정에서 계약물량보다 적게 도착한 경우와 계약상 품질에 비해 함량미달, 상이한 제품도착 등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처치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사료원료는 국제관례상 선적지 보장의 품질 수량 기타조건으로 돼있어 입항지에서의 이의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玉城은 이같은 크레임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키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